「대학원 학칙」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2. 28.) → 2011. 3. 1. 개정 판 (시행 2011. 3. 1.)

바뀜 36 · 신설 2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5/compare?from=40&to=4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2:56:42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또는 학≣연 및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의 학과 및 입학정원과 같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8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5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제9조(등록)**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3.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4.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자격시험에

현 행	개 정 안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_세칙에 따른다.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5. 학점이수를 완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학생신분유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등록금) ①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_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 때에는 기납부한 등록금이 소급 적용된다.
제11조(휴학) ①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제1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신입(편입·재입학포함)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③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④이중학적을 가진 자 ⑤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제17조(편입학) ①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현 행	개 정 안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18조(재입학) ①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8조(재입학)**
제21조(교과과정) ①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제21조(교육과정)**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둔다.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 한다.	**제22조(수강교과목)**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한다.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28조(수료학점)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과과정에서 정한다.	**제28조(수료학점)**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에서 정한다.
제29조(평가시험) 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29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하되 학기말고사는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수업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교과목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A)가 된다.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현 행	개 정 안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 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논문작성)** 학위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작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논문제출 시한) ①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일반휴학자 중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논문제출 시한)** 〈개정 2009-0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40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학과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승인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2.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3.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제43조(학위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제2호의 학위의 종류와 같다.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6조(의결 및 승인)** 명예박사학위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4/5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위를 등록한 후 별지서식 제2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51조(연구실적증명서 발급)**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4호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2조(외국인학생)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장은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현 행	개 정 안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위탁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54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교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대학원장이 공시한다. ④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5조(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결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활동에 관하여는 원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제5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의 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선발기준 및 기본 요건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해당 학기의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해당 학기 성적이 B+(3.5) 이상인 자 4. 채플 결석이 3회 이하인 자 5. 외부 장학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 성적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제60조(조직) ①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조직)** ① 대학원과정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② 학과에는 학사업무를 담당할 학과장과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 대학원협의회,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발전전략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박사과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등 필요시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대학원협의회) 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1조(대학원 교수회)** 대학원 교수회는 각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②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5조(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 ① 박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박사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 설>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74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신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경영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협동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 연≣ 산 또는 학≣ 연 및 학≣ 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중 "[별표]제1호"를 "별표 제1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자 또는 수여 예정자

제6조 중 "납부 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학칙」제5조"를 "학칙 제5조"로 한다.

제9조 중 "대학원시행 세칙"을 "대학원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①학생"을 "① 학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②이미"를 "② 이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③매학기"를 "③ 매학기"로 하고, "기 납부한"을 "기납부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정규등록"을 "① 정규등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휴학기간"을 "② 휴학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공의 변경)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등록 개시일 전 소정의 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변경 전에 이수한 학점인정은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해당학과 내규에 의해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이후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편입학)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적 대학원 과정에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입학)

제21조의 제목 "교과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①각"을 "① 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8조 중 "교과과정"을 각각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②석사과정"을 "② 석사과정"으로 한다.

제22조 중 "수강 한다"를 "수강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료 및 졸업 등)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명서를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29조제1항 중 "①시험"을 "① 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②각"을 "② 각"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4.5
4.0
3.5
3.0
2.5
2.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② 학업성적이 석사과정에서는 C(2.0)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B(3.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균 성적은 석사과정은 B(3.0) 이상, 박사과정은B+(3.5)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 중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계획서를"을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로 하고,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한다"로 한다.

제38조 중 "학위 수여"를 "학위수여"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논문제출 시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단, 이 기간은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③ 입대휴학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2항의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의 제②의 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①대학원장"을 "①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②대학원위원회"를 "② 대학원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③대학원장"을 "③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학위 수여)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석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③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는 경우는 각 대학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3조 중 "[별표]제2호"를 "별표 제2호"로 한다.

제4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별지서식]제2호"를 "별지서식 제2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①연구생"을 "① 연구생"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②연구생"을 "② 연구생"으로 한다.

제51조 중 "[별지서식]제4호"를 "별지서식 제4호"로 하고, "않는다. 단, 연구생이 본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인학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3조 중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①본"을 "① 본"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②공개강좌"를 "② 공개강좌"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③공개강좌"를 "③ 공개강좌"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④공개강좌"를 "④ 공개강좌"로 한다.

제55조 중 "예·결산"을 "예▤ 결산"으로 하고, "한다. 자치활동"을 "한다. 자 치활동"으로 한다.

제57조 중 "시행 세칙"을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①대학원과정"을 "① 대학원과정"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②학과"를 "② 학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③대학원행정협의회와"를 "③ 대학원행정협의회와"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대학원협의회"를 "대학원 교수회"로 한다.

제61조 중 "대학원협의회"를 "대학원 교수회"로 하고,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위원으로"를 "대학원장 및 대학원 전교수를 위원으로"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5조제1항 중 "①박사과정"을 "① 박사과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②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를 "② 대학원박사과정위원회"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재입학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